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통상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객 불편 및 집배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우편서비스 신설 필요성 증가

나.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등본문서(종이)의 보관비용 및 관리위험에 대하여 최근 정부정책(그린뉴딜 등)을 반영하여 접수·관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

다.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신송달업 관련 사업개선명령, 행정처분 기준의 규제조항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우편함배달 선택우편」 도입근거 마련 (안 제25조제1항제1호의3 등 신설)

발송인이 “반환 불필요”, “우편함 배달”을 신청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투합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우편함배달 선택우편」 서비스 도입의 근거 마련

나. 내용증명우편의 전자적 처리근거 마련 (안 제48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내용문서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 보관을 위해 등본 제출기준 및 보관, 내용증명 원본과 등본의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 추가

다. 서신송달업에 대한 규제조항 정비(안 제145조)

서신송달업의 사업 개선명령은 일몰규제 재검토 주기를 연장(3년→5년) 하고 서신송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3년 주기)은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6. ~ 3. 28.)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우편함배달 선택우편

우편물의 접수에서 우편함 투함 전(前)까지의 취급 과정 기록을 전제로 발송인이 “반환불필요”, “우편함배달”을 요청한 우편물을 폐문부재로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제2장제2절제2관의3(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관의3 우편함배달 선택우편 취급

제28조의5(우편함배달 선택우편 취급) 제25조제1항제1의3의 우편함배달 선택우편 취급(이하 “우편함배달 선택우편”이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우편함배달 선택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좌측 중간에 “반환불필요” 및 “우편함배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우편함배달 선택우편물의 접수) 우편함배달 선택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우편함배달 선택우편물의 배달 등) ① 우편함배달 선택 우편물의 배달은 수령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사실 확인 후 배달하는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고, 우편함에 투함한 경우에는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② 우편함배달 선택우편물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터넷우체국 및 전자우편, 정보처리시스템 등(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내용증명 우편물을 접수 및 증명 처리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송인이 제출하는 원본 및 등본, 통수, 처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송인이 인터넷우체국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내용문서 원본을 작성하여 파일 제출하여야 하고, 우체국은 내용문서 원본을 이용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주는 등본과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을 생산한다.

2.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내용문서를 증명 처리하는 경우 발송인은 원본 및 등본 한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우체국은 내용문서 원본을 이용하여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을 생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우체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 등본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

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고, 제3항 제2호의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8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접수할 경우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본확인 날인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전자적 증명처리 방법으로 계인과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제5항(중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4조제3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55조 중 “발송우체국”을 “우체국”으로 한다.

제1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주기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14년 1월 1일”을 각각 “2014년 1월 1일(기준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전일까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015년 1월 1일”을 “2021년 1월 1일(기준일로부터 매 5년이 되는 해의 전일까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①-----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3. 우편함배달 선택우편</u> 우편물의 접수에서 우편함 투함 전(前)까지의 취급 과정 기록을 전제로 발송인이 “반환 불필요”, “우편함배달”을 요청한 우편물을 폐문부재로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2. ~ 22. (생략)	2. ~ 2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2관의3 우편함배달 선택우편</u> <u>취급</u>
<u><신설></u>	<u>제28조의5(우편함배달 선택우편취급) 제25조제1항제1의3의 우편함배달 선택우편 취급(이하 “우편함배달 선택우편”이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우편</u>

<신 설>

<신 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
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

함배달 선택우편물”이라 한다)
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좌측
중간에 “반환불필요” 및 “우편
함배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의6(우편함배달 선택우편
물의 접수) 우편함배달 선택 우
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
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의7(우편함배달 선택우편
물의 배달 등) ① 우편함배달
선택 우편물의 배달은 수령인으
로부터 우편물 수령사실 확인
후 배달하는 단계까지의 취급과
정을 기록하고, 우편함에 투합
한 경우에는 수령인의 수령사실
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② 우편함배달 선택우편물의 취
급범위 및 배달방법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인터넷우체국 및 전자우편,
정보처리시스템 등(이하 “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내용증명 우편물을 접수 및 증명 처리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송인이 제출하는 원본 및 등본, 통수, 처리방법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송인이 인터넷우체국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때에는 내용문서 원본을 작성하여 파일 제출하여야 하고, 우체국은 내용문서 원본을 이용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주는 등본과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을 생산한다.

2. 우체국창구에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내용문서를 증명 처리하는 경우 발송인은 원본 및 등본 한통을 제출하여야 하고, 우체국은 내용문서 원본을 이용하여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을 생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우체국에 보관하는 내용문서 등본은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

③ (생략)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합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① · ② (생략)

③ 제49조 · 제50조 · 제52조 제1
항 내지 제3항 및 제53조의 규

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고, 제3항 제2호의 등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내용문서의 증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8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접수할 경우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진본확인 날인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전자적 증명처리 방법으로 계인
과 간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⑤-----

-----.

다만,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
라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
니한다.

제54조(발송후의 내용증명 청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4항 -----

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1조에 따른 서신송달업 신고 및 변경신고: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2015년 1월 1일

----.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

----- 우체국-----

-----.

제145조(규제의 재검토) -----

----- 다음 각 호의 주기마다 -----

-----.

1. -----
2014년 1월 1일(기준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전일까지)
2. (현행과 같음)
3. -----
2021년 1월 1일(기준일로부터

<u>4. 제144조 및 별표 6에 따른 행 정처분의 기준: 2015년 1월 1 일</u>	<u>매 5년이 되는 해의 전일까지)</u> <u><삭 제></u>
---	--

■ 우편법 시행규칙 [별표 1]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제12조의2제2항 관련)

우 편 물 특수취급 종류	통 상 우 편 물	소 포 우 편 물
등 기 취 급	○	○
준 등 기 취 급	○	
<u>우 편 함 배 달 선택 우 편</u>	<u>○</u>	
보 험 통 상	○	
보 험 소 포		○
내 용 증 명	○	
배 달 증 명	○	○
국 내 특 급 우 편	○	○
특 별 송 달	○	
민 원 우 편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착 불 배 달	○	○
계 약 등 기	○	
회 신 우 편	○	
본 인 지 정 배 달	○	
우 편 주 소 정 보 제 공	○	
우 편 물 의 반 환 정 보 제 공	○	
선 거 우 편	○	

■ 우편법 시행규칙 [별표 3]

선택적 우편역무 종류에 따른 우편물(제25조제2항 관련)

종 류 \ 우 편 물	통 상 우 편 물	소 포 우 편 물
등 기 취 급	○	○
준 등 기 취 급	○	
<u>우 편 함 배 달 선택 우 편</u>	<u>○</u>	
보 험 통 상	○	
보 험 소 포		○
내 용 증 명	○	
배 달 증 명	○	○
국 내 특 급 우 편	○	○
특 별 송 달	○	
민 원 우 편	○	
모 사 전 송 우 편	○	
우 편 주 문 판 매		○
광 고 우 편	○	
전 자 우 편	○	
우 편 물 방 문 접 수	○	○
착 불 배 달	○	○
계 약 등 기	○	
회 신 우 편	○	
본 인 지 정 배 달	○	
우 편 주 소 정 보 제 공	○	
우 편 물 의 반 환 정 보 제 공	○	
선 거 우 편	○	

■ 우편법 시행규칙 [별표 4]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제25조제3항 관련)

구 분	등기	준등기	내용 증명	배달 증명	국내 특급 우편	착불 배달	회신 우편	본인 지정 배달	우편 주소 정보 제공	<u>우편합 배달 선택 우편</u>
등 기 취 급			○	○	○				○	
보 험 통 상	○			○	○					
보 험 소 포	○			○	○					
내 용 증 명	○			○	○					
배 달 증 명	○				○					
국내특급우편	○			○						
특 별 송 달	○				○					
민 원 우 편	○				○					
우편주문판매	○			○	○					
<u>전 자 우 편</u>	○	○	○	○	○					<u>○</u>
우편물방문접수	○			○	○					
착 불 배 달	○									
계 약 등 기	○			○	○	○	○	○	○	
선 거 우 편	○	○								